

수원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단539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8. 11.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27,563,4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7,563,411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 D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5회에 걸쳐 D에게 가계일반자금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D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위 각 가계일반자금대출의 대출금도 연체하였다. 2021. 2. 19.을 기준으로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523,637원이다.

순번	과목	약정일자	원금(원)	이자(원)	수수료(원)	합계(원)
1	신용카드	2016. 12. 05.	927,665	173,635	29,586	1,130,886
2	가계일반 자금대출	2018. 08. 09.	27,084,423	3,143,581		30,228,004
3		2018. 12. 28.	18,542,953	2,176,308		20,719,261
4		2019. 06. 12.	21,116,230	2,286,125		23,402,355
5		2019. 07. 18.	9,462,000	857,028		10,319,028
6		2019. 09. 01.	9,761,433	962,670		10,724,103
합계						96,523,637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20.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피고는 2002.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 2명(2002년생, 2004년생)을 두고 있다가 2020. 1.경 이혼하기로 하면서 수원가정법원에 2020호협11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D과 피고는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2020. 4. 22. ‘D이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D은 2017. 1. 10. 원고로부터 65,721,216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5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D이 위 65,721,216원의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20. 5.경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이 2020.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1. 6.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21,999,900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어 1순위로 F(최우선소액임차인)에게 20,000,000원이, 2순위로 원고(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72,033,504원이, 4순위로 피고(소유자)에게 27,563,411원이 각 배당되었는데, 대한민국은 2021. 6. 16.경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배당금을 집행공탁하였다.

바.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위 가.항의 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가정법원 및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가지는 배당금지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

D와 피고가 200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2020. 1.경 수원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실, D이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인 202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이후 D와 피고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D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D와의 혼인생활 중 공동의 협력에 의해 형성유지되어온 재산으로써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D와 피고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형식적인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과 피고가 약 18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며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D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D이 피고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부담하기로 정하였는바,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일환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이 피고와의 협의이혼 이후 피고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의 존재로 피고에게 약 27,563,411원이 배당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액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D과 피고가 협의이혼 당시 소유하던 재산관계가 증명되고 D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산관계 등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 건물의 표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도로명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6.4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대 381㎡

대지권의 종류 : 1.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81분의 30.49

